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46 발의연월일: 2020. 9. 9.

발 의 자:최연숙·강대식·권영세

권은희 · 김석기 · 서정숙

윤두현 • 이용빈 • 인재근

한무경 · 홍석준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예방·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, 그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이들 지역에서 감염병 예방·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이 부족 한 경우가 있어,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에 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감염병 예방·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 40조의2 등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제8호의2 중 "의약품"을 "의약품 및 장비 등"으로 한다. 제40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중 "의약품"을 각각 "의약품 및 장비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.
- 1.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
- 2.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감염병관리위원회) ① (생	제9조(감염병관리위원회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	②
항을 심의한다.	,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8의2. 제40조의2에 따른 <u>의약품</u>	8의2 <u>의약품</u>
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	<u> 및 장비 등</u>
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	
결정	
9. ~ 11. (생 략)	9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40조의2(감염병 대비 <u>의약품</u>	제40조의2(감염병 대비 <u>의약품</u>
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)	<u>및 장비 등</u> 공급의 우선순위
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	등 분배기준)
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	
유행에 대비하여 제40조제1항	
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	
생산한 <u>의약품</u> 공급의 우선순	<u>의약품 및 장비 등</u>
위 등 분배기준, 그 밖에 필요	
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	
쳐 정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<u>이 경우</u>
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	하는 지역에 우선 분배될 수 있
	도록 정하여야 한다.

<u><신 설></u>	1.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
	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	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
	으로 선포된 지역
<u><신 설></u>	2.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
	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
	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
	<u>지역</u>